

해양수산부 훈령 제219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5년 02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이하 “설계 등”이라 한다)용역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①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의한다.

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①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2 규정에 따라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 20 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용역 규모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제3조에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을 변경 또는 조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한 제1호의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 보고서를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 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⑥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⑨ 발주청은 제3조에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 자료를 7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평가 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자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오류, 누락사항 등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 기술자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결과 공개 등)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해당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여부 등
2.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5. 2. 17. >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설계 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행정규칙의 폐지)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해양수산)」(해양수산부고시 제 2014-31호)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본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은 일반적인 설계용역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으로 용역의 종류, 특성 등에 따라 배점은 달라 질 수 있음

평가항목	세부사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자			50											
1) 사업책임기술자			18	※ 경력/실적이 만점기준의 50%에 미달하는 경우는 0점 처리										
	등 급	절대평가	4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해당분야 특급기술자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고급기술자</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중급기술자 이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0.0</td> </tr> </table>	해당분야 특급기술자 이상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이하			4.0	2.0	0.0		
해당분야 특급기술자 이상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이하												
4.0	2.0	0.0												
	경 력	절대평가	6 (7)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17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17년 미만 15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15년 미만 13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13년 미만 11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11년 미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0(7.0)</td> <td style="text-align: center;">5.4(6.3)</td> <td style="text-align: center;">4.8(5.6)</td> <td style="text-align: center;">4.2(4.9)</td> <td style="text-align: center;">3.6(4.2)</td> </tr> </table> <p>※ () 배점은 TP, SOQ 대상용역 및 용역비(5억원 미만) 소규모 용역에 적용</p>	17년 이상	17년 미만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6.0(7.0)	5.4(6.3)	4.8(5.6)	4.2(4.9)	3.6(4.2)
17년 이상	17년 미만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6.0(7.0)	5.4(6.3)	4.8(5.6)	4.2(4.9)	3.6(4.2)										
	실 적	절대평가	6 (7)	<p>○ 기술자의 최근 10년간 해당분야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15건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15건 미만 13건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13건 미만 11건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11건 미만 9건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9건 미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0(7.0)</td> <td style="text-align: center;">5.4(6.3)</td> <td style="text-align: center;">4.8(5.6)</td> <td style="text-align: center;">4.2(4.9)</td> <td style="text-align: center;">3.6(4.2)</td> </tr> </table> <p>※ () 배점은 TP, SOQ 대상용역 및 용역비(5억원 미만) 소규모 용역에 적용</p>	15건 이상	15건 미만 13건 이상	13건 미만 11건 이상	11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6.0(7.0)	5.4(6.3)	4.8(5.6)	4.2(4.9)	3.6(4.2)
15건 이상	15건 미만 13건 이상	13건 미만 11건 이상	11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6.0(7.0)	5.4(6.3)	4.8(5.6)	4.2(4.9)	3.6(4.2)										
	기술 능력	상대평가	1 (0)	<p>○ 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해당용역관련 경험, 용역수행상 주관점, 용역성공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에 따라 평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미</td> <td style="text-align: center;">양</td> <td style="text-align: center;">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0.8</td> <td style="text-align: center;">0.6</td> <td style="text-align: center;">0.4</td> <td style="text-align: center;">0.2</td> </tr> </table> <p>* 우수 전문인력 참여도,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배점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기술능력 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p> <p>※ () 배점은 TP, SOQ 대상용역 및 용역비(5억원 미만) 소규모 용역에 적용</p>	수	우	미	양	가	1.0	0.8	0.6	0.4	0.2
수	우	미	양	가										
1.0	0.8	0.6	0.4	0.2										
	업무 관리 능력	상대평가	1 (0)	<p>○ 책임기술자의 업무관리능력(해당용역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따라 평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미</td> <td style="text-align: center;">양</td> <td style="text-align: center;">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0.8</td> <td style="text-align: center;">0.6</td> <td style="text-align: center;">0.4</td> <td style="text-align: center;">0.2</td> </tr> </table> <p>* 우수 전문인력 참여도,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배점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p> <p>※ () 배점은 TP, SOQ 대상용역 및 용역비(5억원 미만) 소규모 용역에 적용</p>	수	우	미	양	가	1.0	0.8	0.6	0.4	0.2
수	우	미	양	가										
1.0	0.8	0.6	0.4	0.2										

평가항목	세부사항	평가방법	배점	점수계산방법										
	2) 분야별 책임기술자		22	※ 경력/실적이 만점기준의 50%에 미달하는 경우는 0점 처리										
	등급	절대평가	5	<table border="1"> <tr> <td>해당분야 특급기술자 이상</td> <td>고급기술자</td> <td>중급기술자 이하</td> </tr> <tr> <td>5.0</td> <td>3.0</td> <td>0.0</td> </tr> </table>	해당분야 특급기술자 이상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이하	5.0	3.0	0.0				
해당분야 특급기술자 이상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이하												
5.0	3.0	0.0												
	경력	절대평가	8	<table border="1"> <tr> <td>15년 이상</td> <td>15년 미만 13년 이상</td> <td>13년 미만 11년 이상</td> <td>11년 미만 9년 이상</td> <td>9년 미만</td> </tr> <tr> <td>8.0</td> <td>7.2</td> <td>6.4</td> <td>5.6</td> <td>4.8</td> </tr> </table>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0	7.2	6.4	5.6	4.8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0	7.2	6.4	5.6	4.8										
	실적	절대평가	9	<p>○ 기술자의 최근 10년간 해당분야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p> <table border="1"> <tr> <td>15건 이상</td> <td>15건 미만 13건 이상</td> <td>13건 미만 11건 이상</td> <td>11건 미만 9건 이상</td> <td>9건 미만</td> </tr> <tr> <td>9.0</td> <td>8.1</td> <td>7.2</td> <td>6.3</td> <td>5.4</td> </tr> </table>	15건 이상	15건 미만 13건 이상	13건 미만 11건 이상	11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9.0	8.1	7.2	6.3	5.4
15건 이상	15건 미만 13건 이상	13건 미만 11건 이상	11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9.0	8.1	7.2	6.3	5.4										
	3) 분야별 참여기술자		8											
	등급	절대평가	2	<table border="1"> <tr> <td>해당분야 고급기술자 이상</td> <td>중급기술자</td> <td>중급기술자 미만</td> </tr> <tr> <td>2.0</td> <td>1.0</td> <td>0.0</td> </tr> </table>	해당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중급기술자	중급기술자 미만	2.0	1.0	0.0				
해당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중급기술자	중급기술자 미만												
2.0	1.0	0.0												
	경력	절대평가	3	<table border="1"> <tr> <td>10년 이상</td> <td>10년 미만 8년 이상</td> <td>8년 미만 6년 이상</td> <td>6년 미만 4년 이상</td> <td>4년 미만</td> </tr> <tr> <td>3.0</td> <td>2.7</td> <td>2.4</td> <td>2.1</td> <td>1.8</td> </tr> </table>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0	2.7	2.4	2.1	1.8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0	2.7	2.4	2.1	1.8										
	실적	절대평가	3	<p>○ 기술자의 최근 10년간 해당분야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p> <table border="1"> <tr> <td>10건 이상</td> <td>10건 미만 8건 이상</td> <td>8건 미만 6건 이상</td> <td>6건 미만 4건 이상</td> <td>4건 미만</td> </tr> <tr> <td>3.0</td> <td>2.7</td> <td>2.4</td> <td>2.1</td> <td>1.8</td> </tr> </table>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0	2.7	2.4	2.1	1.8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0	2.7	2.4	2.1	1.8										
	4) 참여기술자의 교육훈련 및 전차용역 수행실적		2											
	교육훈련	절대평가	1.5	<p>○ 참여건설기술자가 최근 3년간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5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0.75점 										
	전차용역 수행실적	절대평가	0.5	<p>○ 참여건설기술자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책임기술자 : 0.25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 0.25점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p>○ 전차용역에 해당하는 사업 없을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배점 0.5점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상대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TP, SOQ 대상용역 및 용역비(5억원 미만) 소규모 용역으로서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실적건수”에 반영한다. 										

평가항목	세부사항	평가방법	배점	점수계산방법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 회사의 최근 5년간 해당 용역과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실적건수	절대평가	7	<table border="1"> <tr> <td>7건 이상</td> <td>7건 미만 6건 이상</td> <td>6건 미만 5건 이상</td> <td>5건 미만 4건 이상</td> <td>4건 미만</td> </tr> <tr> <td>7.0</td> <td>6.3</td> <td>5.6</td> <td>4.9</td> <td>4.2</td> </tr> </table>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7.0	6.3	5.6	4.9	4.2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7.0	6.3	5.6	4.9	4.2																							
실적금액	절대평가	7.5	<table border="1"> <tr> <td>70억 이상</td> <td>70억 미만 60억 이상</td> <td>60억 미만 50억 이상</td> <td>50억 미만 40억 이상</td> <td>40억 미만</td> </tr> <tr> <td>7.5</td> <td>6.8</td> <td>6.0</td> <td>5.3</td> <td>4.5</td> </tr> </table>	70억 이상	70억 미만 60억 이상	60억 미만 50억 이상	50억 미만 40억 이상	40억 미만	7.5	6.8	6.0	5.3	4.5															
			70억 이상	70억 미만 60억 이상	60억 미만 50억 이상	50억 미만 40억 이상	40억 미만																					
7.5	6.8	6.0	5.3	4.5																								
전차용역 수행실적	절대평가	0.5	<p>○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 정도(용역의 종류,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등)에 따라 평가</p> <p>○ 전차용역에 해당하는 사업 없을 경우</p> <p>· 당초 배점 0.5점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상대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TP, SOQ 대상용역 및 용역비(5억원 미만) 소규모 용역으로서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실적금액”에 반영한다.</p>																									
다. 신용도			10																									
1)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 정지, 부실벌점 등			7																									
	용역업자	절대평가		용역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의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참여기술자	절대평가		참여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의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부실벌점	절대평가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자의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2) 재정상태 건실도			3																									
				<p>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준 평가</p> <p>·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 활용</p> <table border="1"> <tr> <td>회사채</td> <td>A- 이상</td> <td>A- 미만 BBB- 이상</td> <td>BBB- 미만 B- 이상</td> <td>CC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어음</td> <td>A2- 이상</td> <td>A2- 미만 A3+ 이상</td> <td>A3+ 미만 B- 이상</td> <td>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신용</td> <td>A- 이상</td> <td>A- 미만 BBB- 이상</td> <td>BBB- 미만 B- 이상</td> <td>CC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점수</td> <td>3.0</td> <td>2.7</td> <td>2.4</td> <td>2.1</td> <td>0</td> </tr> </table> <p><첨부 2 참조 ></p>	회사채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 이상	A2- 미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7	2.4	2.1	0
회사채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 이상	A2- 미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7	2.4	2.1	0																							

평가항목	세부사항	평가방법	배점	점수계산방법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1) 개발실적	절대평가	2	<p>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 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p>※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p>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5년 미만</th> <th>5년 이상 10년 미만</th> <th>10년 이상 20년 미만</th> </tr> <tr> <td>특허</td> <td>100%</td> <td>80%</td> <td>60%</td> </tr> <tr> <td>실용신안</td> <td>100%</td> <td>80%</td> <td>-</td> </tr> </table> <p>2)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p> <p>3)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p>	구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구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2) 투자실적	절대평가	10	<p>1)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p>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3.0% 이상</th> <th>3.0% 미만 2.5% 이상</th> <th>2.5% 미만 2.0% 이상</th> <th>2.0% 미만 1.5% 이상</th> <th>1.5% 미만 1.0% 이상</th> </tr> <tr> <td>점수</td> <td>10.0</td> <td>9.0</td> <td>8.0</td> <td>7.0</td> <td>6.0</td> </tr> </table>	구분	3.0%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1.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구분	3.0%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1.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3) 활용실적	절대평가	3	<p>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p> <p>2)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p> <p>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p>※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p> <table border="1">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5">가 중 치</th> </tr> <tr> <th>1.0</th> <th>0.9</th> <th>0.8</th> <th>0.7</th> <th>0.6</th> </tr> <tr> <td>활용건수 (건)</td> <td>5 이상</td> <td>5 미만 4 이상</td> <td>4 미만 3 이상</td> <td>3 미만 2 이상</td> <td>2 미만 1 이상</td> </tr> <tr> <td>활용금액 (억원)</td> <td>20 이상</td> <td>20 미만 18 이상</td> <td>18 미만 16 이상</td> <td>16 미만 14 이상</td> <td>14 미만 12 이상</td> </tr> </table> <p>*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p>	구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구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평가항목	세부사항	평가방법	배점	점수계산방법												
평가항목	세부사항	평가방법	배점	<p>○ 해당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p>												
				<p>●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평가</p> <p>- 100%미만, 100%~150%미만, 150%~200%미만, 200%~250%미만, 250%이상 등으로 차등 평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100% 미만</th> <th>100~150%</th> <th>150~200%</th> <th>200~250%</th> <th>250%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4.0</td> <td>3.6</td> <td>3.2</td> <td>2.8</td> <td>2.4</td> </tr> </tbody> </table> <p>*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p> <p>* 단, 공고일 기준 현재 6개월 이상 용역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 산입</p> <p>*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자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해당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p>	구분	100% 미만	100~150%	150~200%	200~250%	250% 이상	점수	4.0	3.6	3.2	2.8	2.4
				구분	100% 미만	100~150%	150~200%	200~250%	250% 이상							
				점수	4.0	3.6	3.2	2.8	2.4							
<p>●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평가</p> <p>- 100%미만, 100%~150%미만, 150%~200%미만, 200%~250%미만, 250%이상 등으로 차등 평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100% 미만</th> <th>100~150%</th> <th>150~200%</th> <th>200~250%</th> <th>250%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6.0</td> <td>5.4</td> <td>4.8</td> <td>4.2</td> <td>3.6</td> </tr> </tbody> </table> <p>*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p> <p>*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자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p> <p>*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자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해당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p>	구분	100% 미만	100~150%	150~200%	200~250%	250% 이상	점수	6.0	5.4	4.8	4.2	3.6				
구분	100% 미만	100~150%	150~200%	200~250%	250% 이상											
점수	6.0	5.4	4.8	4.2	3.6											
<p>○ 해당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p>																
<p>마. 업무 중첩도</p>	<p>1) 사업책임기술자</p>	<p>절대평가</p>	<p>4</p>	<p>●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평가</p> <p>- 100%미만, 100%~150%미만, 150%~200%미만, 200%~250%미만, 250%이상 등으로 차등 평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100% 미만</th> <th>100~150%</th> <th>150~200%</th> <th>200~250%</th> <th>250%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4.0</td> <td>3.6</td> <td>3.2</td> <td>2.8</td> <td>2.4</td> </tr> </tbody> </table> <p>*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p> <p>* 단, 공고일 기준 현재 6개월 이상 용역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 산입</p> <p>*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자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해당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p>	구분	100% 미만	100~150%	150~200%	200~250%	250% 이상	점수	4.0	3.6	3.2	2.8	2.4
구분	100% 미만	100~150%	150~200%	200~250%	250% 이상											
점수	4.0	3.6	3.2	2.8	2.4											
	<p>2) 분야별 책임기술자</p>	<p>절대평가</p>	<p>6</p>	<p>●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평가</p> <p>- 100%미만, 100%~150%미만, 150%~200%미만, 200%~250%미만, 250%이상 등으로 차등 평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100% 미만</th> <th>100~150%</th> <th>150~200%</th> <th>200~250%</th> <th>250%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6.0</td> <td>5.4</td> <td>4.8</td> <td>4.2</td> <td>3.6</td> </tr> </tbody> </table> <p>*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p> <p>*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자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p> <p>*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자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해당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p>	구분	100% 미만	100~150%	150~200%	200~250%	250% 이상	점수	6.0	5.4	4.8	4.2	3.6
구분	100% 미만	100~150%	150~200%	200~250%	250% 이상											
점수	6.0	5.4	4.8	4.2	3.6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I.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 [별표 2]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정한 설계 등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업무중복도·해외 설계 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 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이하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4.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5. 상대평가지 등급별 배분(첨부 6)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6.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7.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용역 수행실적·재정상태 건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8.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9. 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4)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건설사업 관리 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의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0. 참여건설기술자의 해외용역 참여 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5)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용역 참여 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의 용역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1. 발주청은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1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 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중 사업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결과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3. 입찰에 참여하고자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공문과 함께 제출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발주청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등의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15. 입찰참가 선정 업체 수는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발주청에서 PQ 평가점수 기준을 제시하여 기준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다만, 상기 업체수가 2개 업체 미만일 때는 재공고함).

16.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평가점수 산출근거 첨부)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II.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자 평가

가.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나.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자의 최근 설계용역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등급, 경력, 실적)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이적계수의 적용을 제외한다.

※ 직전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할 것.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8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

다. 발주청은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분야별 참여기술자를 정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의 등급, 경력, 실적점수 산정 시 가중치 적용하여 차등 평가 한다.

라.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필요시 평가 대상 기술자수를 조정할 수 있다.

마. 참여기술자의 경력,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과 수행 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바. 참여기술자가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사.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자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 기술자(이하 “계약직전문기술자”라 한다)를 해당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자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자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아. 참여기술자의 등급 평가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88호, 2014. 05. 23)」에 의거 산정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역량지수별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자. 참여기술자의 경력평가

1) 사업책임기술자, 항만·해안분야 책임·참여기술자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항만·해안분야 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항만 민간투자사업,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사업,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항건설사업 포함, 이하 같다.)의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경력 및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설계,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중 전문분야가 항만 및 해안분야 경력 : 100%

나) 기타 분야사업 용역중 항만 및 해안분야 사업 설계경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항만·해안분야 공사 감독, 감리(상주, 기술지원)관련 업무 및 관리자 경력 중 전문분야가

항만 및 해안분야 경력 : 80%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의 항만·해안분야 계획경력,
항만·해안사업 시공경력, 건설관련업체 관리자경력, 학교·교육
기관의 항만·해안분야의 강의 경력 : 60%

2) 토목구조, 토질 및 지질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자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항만·해안분야 사업
설계(연구용역 포함)경력 중 해당 전문분야 경력 : 100%

나) 기타 토목분야 사업 설계(연구용역 포함)경력 중 해당 전문분야
경력 : 80%

다) 항만·해안분야 사업 설계(연구용역 포함)경력 중 해당 전문분야
이외의 분야, 항만·해안분야 사업 설계용역 및 공사 감독관련 업무,
항만·해안분야 사업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상주, 기술지원 포함]경력, 항만·해안분야 사업 시공경력,
건설관련업체 관리자경력, 학교·교육기관의 해당 전문분야 강의
경력 : 60%

3) 시공분야 책임·참여기술자

가) 항만·해안분야 설계, 시공경력,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
대행 또는 안전관리)[상주, 기술지원 포함]·감독관련 업무 : 100%

나) 기타 토목분야 시공경력,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상주, 기술지원 포함]·감독관련 업무경력 : 80%

다) 기타 토목분야 설계경력 : 60%

※ 발주청은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해당 용역에 적합하도록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자를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차. 참여기술자의 경력평가 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 1) 참여기술자의 경력인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에 의거 발주청에서 시행한 설계 등의 용역에 참여한 경우로서 해당 경력은 발주청, 참여분야 등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2) 발주기관 근무경력중 개인 경력확인서에 감독관련업무(계획, 지도 감독 포함)를 수행한 용역명 또는 공사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 3) 발주청 및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 인정은 경력확인서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항만·해안분야 건설공사 등의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카. 실적

- 1) 참여기술자의 실적 인정 대상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항만·해안분야 용역사업(비관리청항만공사, 민간투자사업, 어항건설 포함) 중 해당분야에 참여하여 최근 10년 내(공고일 기준)에 전체 준공(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사업(도시계획분야의 경우 종합계획 포함, 예비타당성조사용역은 제외)에 한하여 용역비가 3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평가한다. 단,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 기준을 조정 할 수 있다.
- 2) 상기 대상용역 중 참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용역에 한하여 평가한다.
- 3) 일괄입찰(기본 및 실시설계) 및 대안입찰(대안설계), 기본설계 기술 제안입찰(실시설계)공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사업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에 한하며, 해당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4) 시공분야 참여기술자의 설계 참여 실적은 위 기준을 적용(참여분야 무관)하되, 평가대상기간(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만 인정하고, 시공참여 실적은 총공사금액 300억 원 이상인 항만, 어항건설공사에 대하여 동일사업에 최소한 1년 이상 참여(시공,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舊 감리], 관리감독)한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여 각각의 건수를 합산하되, 설계참여 실적 및 시공 참여 실적의 인정건수 계산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설계참여 실적 적용례>

(평가대상기간에 해당하는 설계수행기간 ÷ 총계약기간) × 1건

<시공참여 실적 적용례> 참여년수 × 3건

1년 이상 2년 미만 참여시 : 3건, 2년 이상 3년 미만 참여시 : 6건
3년 이상 4년 미만 참여시 : 9건, 4년 이상 5년 미만 참여시 : 12건,
5년 이상 참여시 : 15건

타. 사업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 및 업무능력

- 1) 사업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는 첨부1을 참고하여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평가하며, 평가서 미제출시는 0점 처리한다.
- 2) 용역비 5억 원 미만 용역은 사업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다. 다만, 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은 책임기술자의 경력, 실적으로 각각 대신한다.)

파. 교육훈련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하. 전차용역 수행실적

전차용역이라 함은 해당용역의 前 단계 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참여건설기술자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1) 전차용역의 경과기관은 평가대상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준공년도의 경과에 따른 비율을 반영한다.

※ 기간경과율

3년 미만 : 100%, 3년 이상 5년 미만 : 75%, 5년 이상 7년 미만 : 50%,
7년 이상 10년 미만 : 25%, 10년 이상 : 0%

- 2)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에 한하여 평가하되 과업기간에 대한 참여기간 비율을 반영한다.

※ 참여기간 비율 : 참여 용역기간/ 전체 용역기간

다) 전차용역에 대한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text{배점} \times \text{기간 경과율} \times \text{과업기간 참여비율} = \text{전차용역실적}$$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한다.

- 1) 참여업체의 유사용역사업 인정 대상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으로서 전체 준공(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 용역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이상인 용역사업(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한하여 인정하며,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준공용역금액은 조정이 가능하다.(단, 예비타당성조사용역은 제외한다)

※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평가 관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준공용역비 1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기업체에서 발주한 용역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유사용역실적 건설공사에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사업에 의한 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하되,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설계보상 대상자의 유사용역실적은 낙찰자의 80%로 한다.

가) 실적금액은 낙찰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아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또는 대안입찰공사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서류와 공사금액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설계보상대상자의 경우에도 해당 발주기관의 증빙 서류 등 제출)

※ 민간투자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 사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근거서류, 공사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 사업시행자와 설계용역사간에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설계완료 증빙자료 등

3) 해외실적의 경우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해외실적의 경우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은 용역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관련자료 미제출시 평가제외)

4) 유사용역 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한다.

가) 유사용역 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용역참여 지분비율대로 반영한다.

나)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각 참여회사의 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건수 및 금액 규모를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예시 1)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의 유사용역 평가

실적건수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7.0	6.3	5.6	4.9	4.2
실적금액	30억 이상	30억 미만 20억 이상	20억 미만 10억 이상	10억 미만 5억 이상	5억 미만
	7.5	6.8	6.0	5.3	4.5

예시 2) 연안정비사업의 유사용역 평가

항만분야 (50%)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연안분야 (50%)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
	7.0	6.3	5.6	4.9	
항만분야 (50%)	60억 이상	60억 미만 50억 이상	50억 미만 40억 이상	40억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연안분야 (50%)	10억 이상	10억 미만 7억 이상	7억 미만 4억 이상	4억 미만 1억 이상	1억 미만
	7.5	6.8	6.0	5.3	4.5

예시 3) 환경영향평가 관련 유사용역 평가

실적건수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7.0	6.3	5.6	4.9	4.2
실적금액	40억 이상	40억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20억 이상	20억 미만 10억 이상	10억 미만
	7.5	6.8	6.0	5.3	4.5

나.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1) 전차용역이라 함은 해당용역의 前 단계 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업체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정도(용역의 종류,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설계 등의 용역업자 경우에는 용역업자에 한해서, 하도급을 받은 비율(하도급금액/원도급자 전체 용역계약금액)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 기간경과율

3년 미만 : 100%, 3년 이상 5년 미만 : 75%, 5년 이상 7년 미만 : 50%, 7년 이상 10년 미만 : 25%, 10년 이상 : 0%

3) 해당 전차용역을 수행중이거나 완료되지 않은 전차 용역의 실적은 발주청이 발행한 실적증명서(기성률 확인)를 첨부한 경우 기성률만큼 실적을 인정한다.

4) 전차 용역이 2개 이상 중복되어 해당될 경우 해당업체에 유리한 1개 분야만 적용한다.

5) 전차용역에 대한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text{배점} \times \text{기간 경과율} \times \text{기성률} \times \text{전차지분율} \times \text{금회지분율} = \text{전차용역실적}$
--

예시) 금회 공동도급사중 2개사 이상 전차용역에 참여한 경우(준공 후 3년 미만)

전차	금차	적용
A사 40%	A사 50%	$80\% \times 70\%$ $= 56\%$ 적용
B사 40%	D사 30%	
C사 20%	B사 20%	

※ 전차지분율의 합 : 80%, 금차지분율의 합 : 70%

계산예시) 전차실적 = 0.5 x 100% x 100% x 80% x 70% = 0.28

3. 신용도

가. 입찰참가 제한기간, 영업정지(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1)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참여업체)

용역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의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한다.

2)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의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한다.

3) 부실벌점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한다.

※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나. 재정상태 건설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2)할 수 있다.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

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기술개발 실적

1) 건설신기술·특허·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항만·해안분야(해당사업 해당공종) 설계 등의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항만·해안분야(해당사업 해당공종)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 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4)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 5)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개발 실적 건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투자실적

-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회사 설립연수 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개년 투자비율합계/2 또는 1개년 투자비율로 하며, 설립 연수가 3년 이상 된 업체가 3년간 자료를 미제출시는 제출자료 합계/3)

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한다.

- 2)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R&D 참여 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단,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투자실적에서 제외 가능)

가) R&D 사업 참여 실적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첨부 3)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해당 연구개발사업(과제)의 중간 및 최종평가 시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른 “기획연구”과제에 대한 참여 실적은 R&D 사업 참여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해당 설계 등의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으로 한다.

5)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각 비율에 구성원별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다.

다. 활용실적

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한다.

2) 용역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해당 기술의 공사기성 완료 시점)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 시점)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5)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업무 중첩도

- 1) 해당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현재 수행 중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기술지원기술자 제외) 등 다른 설계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 단,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2014년 5월 23일 이후 발주된 용역부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 2) 발주청은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업무 중첩도는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가중치를 별도로 정하여 차별 평가한다.

- 3) 본 과업과 중복되는 대상사업은 공고일 이후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것에 한하여 적용하며, 업무중복도는 참여중인 쏘 전문분야(해당 전문 분야외의 타 전문분야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단,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자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등은 해당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4)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예시) 분야별 책임기술자 업무중첩도 산정방식(분야별 각각 중첩도 산정 후 합산하여 적용한다)

구 분	중첩도	적 용
항만·해안 40%	100%미만	6×40%×100%
토질·지질 30%	150%미만	6×30%×90%
구조분야 30%	100%미만	6×30%×100%
계		5.8

※ 항만·해안 중첩도 : 2.4, 토질·지질 중첩도 : 1.6, 구조분야 : 1.8
계산예시) 분야별 업무중첩도 = 2.4 + 1.6 + 1.8 = 5.8

- 5) 업무중복내용은 해당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참여 중인 용역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해당기술자의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단, 누락된 용역의 과업기간을 합산 평가하여 점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기술자 중복도 점수를 0점 처리한다.)

용역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1. 기술능력 평가서

1.1 해당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해당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 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해당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 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해당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해당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해당용역 관련 각 분야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 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 해당사업 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
(책임기술자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해당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 해당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3.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0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p>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200px;">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p>							

첨부 4.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I.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역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주국)
3) 발주기관성격	정부(), 공공기관(), 민간()	4) 계약주체	본사(), 지사(), 현지법인(), 지분율(%)		
5) 신청자 (대표)	5-1) 회사명	5-2) 면허번호	5-3) 대표자		
	5-4) 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여부	원도급(), 하도급()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단독도급()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 건설관리(), 타당성조사(), 기타()				
II.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사명					
2) 대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III. 붙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인자					
용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역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주처					

첨부 5.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확인서

I.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청인	1-1) 회사명			1-2) 대표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II. 해외설계용역					
1) 공사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주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단독도급() ※ 해당란에 ○ 표				
III. 참여기술자 현황		* 참여기술자별로 구분 작성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자	○○○	000000-0000000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자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자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자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자	○○○				개월
IV. 붙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가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p> <p><u>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u> 귀하</p> <p style="text-align: right;">주소 : 회사명 : 대표 : (인)</p>					
확인자					
용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인)		
발주처					
공사명					

첨부 6. 상대평가 시 업체수별 등급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	1	1			
3	1	1	1		
4	1	1	1	1	
5	1	1	2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16	2	3	6	3	2
17	2	3	7	3	2
18	2	4	7	3	2
19	2	4	7	4	2